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농·축산·임·어업용기자재및
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
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상목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등이 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산물 건조기 등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도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등의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. 25. ~ 2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
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
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
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의2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농업용 무인 항공기

나. 농산물 건조기(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)

다.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(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하
다)

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등유”를 “등유, 중유”로 한다.

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
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
에”를 “제2항에”로, “제1항제1호”를 “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①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양회가 홈페이지
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
1.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
2.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
3.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
4. 석유판매업자 지정 현황

별표 2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6. 가축 생체정보수집기(임신진단기를 포함한다)

별표 5 제8호 중 “다겹보온덮개”를 “다겹보온덮개·다겹보온커튼”으로 하고, 같은 표에 제64호부터 제6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4. 농업용 관비기
65. 농업용 양액기
66. 스마트팜용 센서류(온실이나 축사의 온도, 습도, 이산화탄소,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)·구동기류(驅動機類)
·복합환경제어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·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산물 건조기,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농·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 제8호 및 제64호부터 제6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·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) ①법 제10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 “농어민 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	제6조(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1의2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양회(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). <u>다만, 농업용 무인 항공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.</u>	1의2.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.</u> <u>가. 농업용 무인 항공기</u> <u>나. 농산물 건조기(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)</u> <u>다.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(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)</u>

1의3.·2. (생략)

② 삭제

제17조(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
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)

①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
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농업기계, 어업기계
및 선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
다.

1. 농업용 트랙터, 농업용 콤바
인, 농업용 난방기, 농선(10톤
이상인 것만 해당한다), 버섯
재배소독기, 곡물건조기 및 농
산물건조기. 다만, 농업용 난
방기, 버섯재배소독기, 곡물건
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
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
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

2.·3. (생략)

② ~ ⑦ (생략)

제20조의3(면세유 공급명세의 홈
페이지 공개) <신설>

1의3.·2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
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)

①-----

--.

1. -----

----- 등
유, 중유 -----
-----.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3(면세유 공급명세의 홈
페이지 공개) ① 법 제106조의2
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
관인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개
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

① (생 략)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<u>제1항에</u>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때에는 <u>제1항제1호</u> 및 제2호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.	<u>각 호의 것으로 한다.</u> 1. <u>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</u> <u>합계</u> 2. <u>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</u> <u>계</u> 3. <u>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</u> <u>등 신고 현황</u> 4. <u>석유판매업자 지정 현황</u>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 ③ ----- <u>제2항에</u> ----- ----- <u>제2항제1호</u> ----- ----- -----.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26